

# 2018년 곤명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안내

우리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은 곤명면에 대한 2018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 I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8. 7. 23. ~ 7. 25.(3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4명
- 감사범위 : 2016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 전반
- 감사중점
  - 각종 지시사항 및 주요시책 추진사항
  - 세출예산 집행 및 민원처리 실태
  - 공사추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타 업무 추진에 따른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여부 등

## II 감사 결과

### □ 지적사항

#### ① 행정상 조치 : 24건

- 처분요구 : 13건(시정 8, 주의 5)
- 현지조치 : 주의 11

#### ② 재정상 조치 : 시정(회수) 8건 3,341천 원, 시정(환급) 1건 5천원

#### ③ 신분상 조치 : 3건 주의 4명

## IV 주요 지적사항

###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140조(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규정에 따르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징구 건에 대하여 매입처 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 정수물품 미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사천시 물품관리조례」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물품관리관은 물품 매입 등의 요구가 있으면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된 물품 인지의 여부와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수물품을 구매하면서 정수책정(심사)없이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

## 지역개발채권 매입관련 계약업무 소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1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0.75,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17. 00. 00일 종합가스, 싱크 대표 백00와 물품구매 및 수리계약을 체결한 『00경로당 싱크대 및 장관교체』 건이 계약금액 280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임에도 확인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무료지급조서 작성 소홀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급을 받는 사람은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조례 제33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면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무료지급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쓰레기봉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 전입신고 사후 확인 및 관리업무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리·통장에게 보내야 하며, 리·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8년 0월0일에 전입한 장○○ 외 62건의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신고 확인서에 거주여부에 대한 표시하지 않았고, 2017년 \*월\*일에 전입한 안○○ 외 70여건에 확인일자가 없었으며, 2017년 &월&일에 전입한 김○○ 외 9건에 세대주(원)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하지 않는 등 전입자 사후 확인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 □□마을 안길 포장공사 추진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1)”, 제9절 “1-가-3)” 에 따라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현장여건상 소할활용으로 처리가 불필요한 건설폐기물에 대해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금 225,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리 공용화장실 신축공사 [건축] 추진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1)”, 제9절 “1-가-3)” 에 의거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리 공용화장실 신축공사(건축)를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가설공사 시 현장여건상 기준틀 설치 불필요하여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금668,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가뭄대비 송수관 매설공사 추진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1)”, 제9절 “1-가-3)” 에 따라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뭄대비 송수관 매설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도로 횡단작업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불필요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금583,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 00000 긴급보수공사 추진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1)”, 제9절 “1-가-3)” 에 따라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00000 긴급보수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평데크 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 시공은 불필요하여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준공 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금16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 ☆☆마을 농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1)”, 제9절 “1-가-3)” 에 따라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 농로 정비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도로포장 시 기존 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구멍뚫기 수량이 과다 적용되어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금 56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 □□, ■■마을 농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1)”, 제9절 “1-가-3)” 에 따라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검사 시에는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격 또는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의 이행내용을 정확히 감독 및 검사하여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는 재시공, 감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 농로 정비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도로포장 시 콘크리트 포설품을 적용하여야 하나 레미콘 타설품으로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어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준공검사 시 정산 조치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써 공사비 금179,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